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61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이재호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변호사 문희웅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시현

3. D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2. 12. 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10. 선고 2020가단933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 B는 피고 D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2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7. 접수 제40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피고 D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고 D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 제1심판결 3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의 선친인 망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원고와 197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일부

기간(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을 제외하고 동거하여 온 사실, 1982.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198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판사 정하정